고용노동부

# 보도설명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| 보도 일시 | 배포 즉시 | 배포 일시 | 2023. 3. 14.(화) |
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노사협력정책관<br>노사협력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김수진 (044-202-7587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김은화 (044-202-7588) |
| | 노사협력정책관<br>노사관행개선지원TF | 책임자 | 과 장 조충현 (044-202-7692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박은정 (044-202-7695) |

**최근 노조 회계 관련 정부의 자료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,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.**

## 1. 주요 기사 내용

□ 3.13.(월) MBC 뉴스, [뉴스하이킥] 尹 “노조, 정부 지원금 1,500억원.. 회계장부 제출 안해” 모두 틀린 말?

- ㅇ 정부가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줬다기 보다는 일단 보조금이며 보조금이라는 것은 (중략) 원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정부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(중략) 그걸 민간에다 주는 걸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임
- ㅇ 지방정부가 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체크할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음
- ㅇ 두 개의 회계자료는 완전히 별개의 것임.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조합원 회계를 달라 이건 아님
- ㅇ 표지뿐만 아니라 내지를 달라고 정부가 요구 (중략) 노조 조합원 명부 같은 것은 한페이지만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명부가 정부한테 갈 수가 있는 것임
- ㅇ 경총이나 사업주 단체들한테 그렇게 국고보조금 많이 주면서 10배 이상 주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음 (중략) 회계자료 요구 안해
- ㅇ (생략) 민당정협의회라는 데서 법제화하고, 노조회계를 다 밝히도록 요구. 조합원 50%가 원하면 노조회계 공시하게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정한 사유를 지정해서 그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공시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잠재적 범죄집단이고, 잡도리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함

## 2. 설명 내용

### ① 노동단체 지원사업 중 전체가 정부 수행사업을 대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

○ **노조 간부교육** 등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일부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,

○ 이에 최근 취약계층 권익 보호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대행에 한해 **재정을 지원**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함('23.3월)

### ② 정부는 노조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님

○ 정부가 요구한 것은 노조의 회계자료 전체가 아니라 **노조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**할 수 있는 **최소한의 증빙자료**임

○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·보존 등 **투명한 회계 관리**와 **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**은 재정 지원과 관계없이 **노조가 지켜야 할 '법적 의무'**이고,

○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,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, 보조금 사업수행주체가 **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**를 **준수**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**'정부의 책무'**임

### ③ 노조 재정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과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음

○ 공개 경쟁을 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노조에 지원해온 사업(「노동단체 지원사업」)은 **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**을 통해 지원대상을 **선정**하고 있으므로,

○ **회계가 투명한 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**하여 사업이 **투명하고 책임있게**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**재정낭비**도 막고자 하는 것임

### ④ 표지, 내지 1장 제출 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

○ 이번 노조의 재정 장부·서류 비치·보존 점검 시 제출된 증빙자료는 해당 **서류가 비치·보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**으로만 활용됨

○ 증빙자료는 속지 중 특정부분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자유롭게 **“1쪽”을 골라 제출**토록 하고,

○ 노조 내부 운영 관련된 **민감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**하는 것도 인정하였음

⑤ <u>경총 등 사업주 단체도 회계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시하고 있음</u>

○ **노동조합**에 대해서 **노동조합법에 따라** 재정에 관한 장부 등의 비치·보존 **의무를 부여**하는 것과 같이, **사용자단체는 민법, 비영리법인 관리 규정 및 단체 내부 규정**에 따라 **재정 관련 자료를 공개**하고 있음

○ 한국경영자총협회는 **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**으로 **정부 보조사업**에 대해 **정산**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**수입·지출 예·결산서**, **재산목록 등을 보고**하도록 하고 있으며,

- 지난 2.28. **’22년 예·결산서, 실적 및 ’23년 계획**에 대해서도 제출을 완료하였음

○ 대한상의, 중기중앙회, 전경련도 **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전 회원사에 공개**하고, **홈페이지에 결산보고서** 등 **회계 관련 서류를 공시**하고 있음

⑥ **노동조합 회계 공시 활성화**는 **조합원**이 **언제든지** 노조의 **재정 정보를 열람**하고, **전체 근로자**의 **단결권·선택권**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

○ 헌법상 **비례의 원칙** 및 **ILO 협약** 등과 노동조합은 **자주적 단결** 조직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**노조 회계 ‘자율 공시’를 활성화**하면서,

○ **노동조합의 민주성 강화**와 **조합원의 권익 향상**를 위해 [1]일정 규모 이상 노조로서 **과반수가 넘는 조합원이 공시를 요구**하는 경우, [2]횡령·배임 등 **위법한 재정 운영**으로 **노동부장관이 요구**하는 경우에만 **공시 의무**를 부여하는 법제화 방안 추진

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